
〈인스빌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2026. 6.



의 왕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인스빌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의왕시 도시정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단지현황

단지명	위 치	건 물 규 모				
		연면적(동수)	구조	층수	세대수	준공년도
인스빌 아파트 (1·2단지)	의왕시 왕곡동 592번지 일원	91,303.56㎡ (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철근 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18층	504	1994

2) 용역범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금172,4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참가자격: 가. ~ 다.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5>에 따른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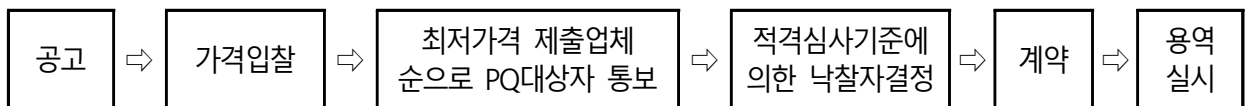
※ 상기 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함**

3. 평가기준

- 가.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표4>의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나.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 12.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이며 차후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시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
- 다.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2025. 7. 4.),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적용
-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

4. 낙찰자 선정방법

- 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입니다.
-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라. 용역업체 선정절차



※ 적격심사 기준

-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8)+경영상태(2)+입찰가격(60)
+기술인력(△10)+계약질서준수(△1.0) ≥ 95점
-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나. 제출장소 : 의왕시청 도시정비과(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증축동 2층)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평일 09:00~18:00 제출 가능, 우편·팩스·택송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2) 사업자등록증(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4)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7) 참여기술인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평가기준 포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

바. 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게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출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안내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마.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바.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관련 쪽수 비고란 표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평가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접수 후 일체의 변경, 수정, 추가 자료를 받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나. 모든 증빙자료는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첨부할 경우 “원본대조필 (회사 인감 날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다.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관리수탁 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상이하거나, 필요한 서류나 실적을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증빙서류는 항목별로 시작페이지에 색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실격 처리
 - 2) 신청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와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 부분에 형광펜과 일련번호 등으로 표시
- 바.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수정 또는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제출업체가 부담합니다.
-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8. 평가자료 작성방법

가.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나. 인쇄 및 제본

- 1)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 2) 재 질 : 백상지(80g/m²)
- 3)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
- 4) 제본방법 : 무선 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5) 제본순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서식)
 - 목차
 - 용역 참여 신청서(서식 1)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식 2)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 2-1)
 - 참여회사 일반현황(서식 3)
 -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서식 4)
 -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서식 5)
 - 유사 용역 수행실적(서식 6)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서식 7)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서식 8)
 -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9)
 - 개발·활용실적(서식 10)
 - 투자실적(서식 11)
 - 업무중첩도(서식 12)
 - 교육이수실적(서식 13)
 - 가점(서식 14)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서식 15)

다.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인감 날인

9.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나. 용역수행 참가 신청업체가 작성한 평가신청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경우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범위

1)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 점
총 계			100
참여기술인 (45)	소 계		45
	책임기술인 (18)	•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 경 력	8
		• 실 적	5
			5
	분야별책임기술인 (18)	• 등 급	2
		• 경 력	6
		• 실 적	5
			5
	분야별참여기술인 (9)	• 등 급	2
		• 경 력	3
		• 실 적	4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소 계		25
	•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12
	•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13
신용도 (10)	소 계		10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업무정지		3
	• 재정상태 건실도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소 계		10
	• 개발실적		1
	• 활용실적		1
	• 투자실적		8
업무중첩도 (10)	소 계		10
	• 책임기술인		6
	• 분야별책임기술인		4

2) 가점 기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1~0.3

※ 단, 1)~2)항 점수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 최대 100점까지만 인정

10.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인 평가항목 : 【45점】

(공통 분야)

- 1)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총 3인을 평가합니다.
 - 2) 해당 기술자격증, 학력인정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 수료증,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 날인).
 -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합니다.
-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되어야 함.

(1) 책임기술인 : 18점

(가) 자격평가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
-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

(나) 경력평가 (8점)

- ①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
- ② 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
- ③ 배 점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배 점	8.0	7.2	6.4	5.6	4.8

(다) 실적(건수)평가 (5점)

- ①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 기준)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준공금액 5,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 12.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②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지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
- ③ 해당 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
- ④ 배 점

실적(건수)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배 점	5.0	4.5	4.0	3.5	3.0

※ 단, 0건은 0점 처리

(라) 실적(금액)평가 (5점)

실적(금액)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배 점	5.0	4.5	4.0	3.5	3.0

※ 단, 0원은 0점 처리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점(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이어야 함)

(가) 자격평가 (2점)

- 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인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
-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
-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 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
- ④ 배 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건축분야	2.0	1.8	1.6	1.4

(나) 경력평가 (6점)

- ①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
-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
- ③ 배 점

경 력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배 점	6.0	5.4	4.8	4.2	3.6

(다) 실적(건수)평가 (5점)

- ①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 기준)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준공금액 5,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 12.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②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지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
- ③해당 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
- ④배 점

실적(건수)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배 점	5.0	4.5	4.0	3.5	3.0

※ 단, 0건은 0점 처리

(라) 실적(금액)평가 (5점)

실적(금액)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배 점	5.0	4.5	4.0	3.5	3.0

※ 단, 0원은 0점 처리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인이어야 함)

(가) 자격평가 (2점)

- ①「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
-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
-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
- ④배 점

분 야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건축분야	2.0	1.8	1.6

(나) 경력평가 (3점)

- ①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②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
- ③ 배 점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배 점	3.0	2.7	2.4	2.1	1.8

(다) 실적평가 (4점)

- ①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 기준)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준공금액 5,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 12.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
-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②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지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
- ③ 해당 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
- ④ 배 점

실적(건수)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 점	4.0	3.6	3.2	2.8	2.4

※ 단, 0건은 0점 처리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 【25점】

(가) 기준

- ① 최근 5년(공고일 기준) 이내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 VAT 포함)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FMS에 등록된 실적 또는 공동주택 안전진단(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또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
-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총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으로 각각 평가

(나) 배 점

① 실적(건수) 평가 (12점)

실적(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 점	12.0	10.8	9.6	8.4	7.2

※ 단, 0건은 0점 처리

② 실적(금액) 평가 (13점)

실적(금액)	500% 이상	500% 미만 400% 이상	400% 미만 300% 이상	300% 미만 200% 이상	200% 미만
배 점	13.0	11.7	10.4	9.1	7.8

※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 / 해당용역 발주규모) × 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 단, 0원은 0점 처리

다. 신용도 평가항목 : 【10점】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점)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②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함
- ③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

(나) 업무정지 (3점)

- ① 용역업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② 참여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다)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①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음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첨부 1 참조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항목 : 【10점】

(가) 개발실적 (1점)

- ①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함)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특허 : 0.3점(건당)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 ③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④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활용실적 (1점)

-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②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③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특허 : 0.3점(건당)

- ④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⑤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	0.9	0.8	0.7	0.6
실 적 (건 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실 적 (금 액)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 활용실적에 대한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투자실적 (8점)

- ①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②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③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0% 이상	3.0% 미만 ~ 2.5% 이상	2.5%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1.5% 이상	1.5%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마. 업무 중첩도 평가항목 : 【10점】

(가) 책임기술인 (6점)

①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배 점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①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배 점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바. 가 점 : 【0.3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1~0.3점)

① 건설기술인의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고 용 률	1% 이상	2% 이상	3% 이상
가 점	0.1	0.2	0.3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 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 및 지침

(표지서식)

	2cm	2cm
2cm	접수번호 [13Point]	

인스빌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18Point]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8Point]

2026. .[23Point]

회 사 명 : [16Point]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서식 1】

재건축진단 용역 참여 신청서

수 신 : 의왕시장

접수번호

참 조 : 도시정비과

제출일자 : 2026. . .

제 목 : 재건축진단 용역 참여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인스빌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4.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7. 참여기술인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

4. 접 수 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의 왕 시 장(관인생략)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본인(업체)은 의왕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 기재, 부실한 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자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인)

의왕시장 귀하

【서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인)

의왕시장 귀하

참여회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회사설립 연 도			

2026. . .

작성자 : 직 성명 (인)

의왕시장 귀하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해당 분야 경력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 주) 1.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2.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
3. 참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단,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 처리함)
4. 참여기술인(책임, 분야별 책임, 분야별 참여)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근무경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6. 참여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근무경력	년	월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나. 해당분야 경력(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 평가서 및 엑셀로 작성하여 usb 제출

연 번	용 역 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1	예) 00정밀안전진단	의왕시청	20.01.01-20.6.30 (경력증명서일)	30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해당분야 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연 번	용 역 명	준공금액(천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 고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합 계	건	천원				

- 주)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준공금액 5,000만원 이상, VAT포함)**을 말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증명서 또는 발주처 발행 참여기술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5.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 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합 계						

주) 1. 유사용역사업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준공금액 5,000만원 이상, VAT포함)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2025. 12.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FMS에 등록된 실적(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합니다.(당해 용역과 유사한 재건축진단 또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실적에 한해 추가 인정)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한다.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교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5.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서식 7】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용역명	조치기관명	평가내용		비고
			평가결과	사유	

- 주) 1.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최근 1년간(처분일자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재한다.
2.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가. 입찰참가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 고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회사 및 참여기술자의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성 명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안 전 진 단 전 문 기 관				
책 임 기 술 인				
분 야 별 책 임 인 기 술 인				
분 야 별 참 여 인 기 술 인				

-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2.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자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자 본 금	

2.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 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 제 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 출
해당등급 (○)				
점 수	3.0	2.8	2.1	0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개발명칭	지정권자	지정일	만료일	사 용 실 적		비 고
					건 수	금액(억원)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개발명칭	최초출원인	출원일	만료일	사 용 실 적		비 고
					건 수	금액(억원)	

- 주) 1. 기술개발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진단관련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기재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2.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지정서·활용실적증명서, 특허는 특허증·등록원부·최초출원인 확인서·활용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자체개발만 작성하며 출원중인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제외한다.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투 자 실 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용역부문 기술개발 투자금액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기 타				
소 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					
투자비율 (%=㉠/㉡×100)					3개년 평균치로 기재

- 주) 1.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지정된 사항에 한하여 증빙 서류를 첨부 한다.(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사본)
2.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4.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중 사무실 임대수입, 제조업수입을 제외하고 기재한다.(건설부문은 「건설기술 진흥법」 상 건설기술 관련분야를 총칭하며, 감리와 공사도 포함한다)
5. 2023년, 2024년, 2025년 결산보고서 사본첨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6.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하고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기입

업 무 중 첩 도

☐ 책임기술인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고

☐ 분야별 책임기술인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고

주) 1.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별로 작성한다.

2. 현재 진행중인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허위기재 시에는 임의로 처리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 잔여기간 산정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중첩 용역의 준공예정일까지 중 공고된 용역기간(90일)의 합

【서식 13】

교육 이수 실적

☐ 참여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등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되고,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 처리)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현황)

구 분 (참여회사)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①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②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①/②×100)	비 고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2026. . .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참 여 기 술 인	계		45		
	책임 기 술 인	소 계	18		
		등 급	—	적격	
		경 력	8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8		
		등 급	2		
		경 력	6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9		
		등 급	2		
		경 력	3		
		실적건수	4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5		
	용역수행 건수		12		
	용역수행 금액		13		
신용도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업무정지		3		
	채정상태 건설도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실적		1		
	활용실적		1		
	투자실적		8		
업 무 중첩도	계		10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		4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

※ 평가점수 산출근거를 반드시 작성바랍니다.

※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평가항목			세부내용 실적		업체명		지분율(%)		비고
							100%		
참 여 기술인	구 분		성 명		자 격	경 력	유사용역 실적	유사용역 실적	
	책임기술인					년 월	건	천 원	
	분야별 책임 기술인	조사및 시험				년 월	건	천 원	
		분석및 평가				년 월	건	천 원	
	분야별 참여 기술인	조사및 시험				년 월	건		
		분석및 평가				년 월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건				
			금 액		원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불량 : 건 매우불량 : 건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업무정지 등 (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분야 참여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재정상태 건설도(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신 기 술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 원			
환산점수 :									
특 허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 원					
				환산점수 :					
투자실적 (억 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	
		총매출액							
기술자 업 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책임기술인						개월		
	분야 책임 기술자	조사 및 시험					개월		
		분석 및 평가					개월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고용률 : %				

【서식 16】

위 입 장

용 역 명 :

상기 용역건의 교부, 등록, 입찰 등 용역계약에 있어서 당사 직원인 ○○○에게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의왕시장 귀하

재직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부서		직 위	
재직기간			
특기사항			
용 도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